

의안번호	2209292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6. 11.
추 계 번호	25F18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69.3억원, 2030년 180.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874.2억원(연평균 174.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91.7억원(연평균 -38.3억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50.5억원(연평균 -50.1억원)
 -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0.5억원(연평균 -8.1억원)
 -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76.2억원(연평균 -75.2억원)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7억원(연평균 -1.1억원)
 -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9.5억원(연평균 -1.9억원)
 -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 48조)은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액이 100만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46조제1항)	-37.0	-37.6	-38.3	-39.0	-39.7	-191.7	-38.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46조제2항)	-47.6	-48.8	-50.1	-51.4	-52.7	-250.5	-50.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46조제3항)	-8.1	-8.1	-8.1	-8.1	-8.1	-40.5	-8.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46조제4항)	-74.0	-74.6	-75.2	-75.9	-76.6	-376.2	-75.2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안 제47조)	-1.10	-1.12	-1.14	-1.15	-1.17	-5.68	-1.14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48조)			미첨부	1호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안 제49조)	-1.5	-1.7	-1.9	-2.1	-2.4	-9.5	-1.9
합 계	-169.3	-171.9	-174.7	-177.6	-180.7	-874.2	-174.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제1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2	안 제46조제2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3	안 제46조제3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4	안 제46조제4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5	안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6	안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7	안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개정안) 2030.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6조제1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2	안 제46조제2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3	안 제46조제3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4	안 제46조제4항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5	안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6	안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7	안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5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46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16.6억원에서 2022년 23.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7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15.5억원
 - (재산세) 2020년 17.9억원에서 2023년 19.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3.1%
- (안 제46조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3.3억원에서 2023년 31.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13.6억원
 - (재산세) 2020년 27.5억원에서 2023년 30.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3.6%
- (안 제46조제3항)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3년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취득세 감면액: 7.9억원
 - (재산세) 2023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재산세 감면액: 0.2억원
- (안 제46조제4항)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52.4억원에서 2023년 80.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59.1억원
 - (재산세) 2020년 11.4억원에서 2023년 12.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4.0%
- (안 제47조)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0.05억원에서 2021년 1.0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0.26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0.3억원
 - (재산세) 2019년 0.7억원에서 2023년 0.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2.1%
- (안 제48조)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은 최근 감면실적을 감안할 때,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 68.0만원
- (안 제49조) 해양환경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0.2억원에서 2022년 4.5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0.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1.1억원
- (재산세) 2019년 0.1억원에서 2023년 0.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25.8%

3. 상세 추계내역

가.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6조제1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
 - 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2020년 이후 추가 감면 시행, 2020~2022년은 취득세 및 재산세 45% 감면, 2023년 이후 50%로 감면율 확대)

□ (추계방법)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16.6억원에서 2022년 23.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7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15.5억원

- (재산세) 2020년 17.9억원에서 2023년 19.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3.1%

[표 2]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34.5	39.8	44.8	21.3
- 취득세	16.6	20.3	23.5	1.7
- 재산세	17.9	19.5	21.4	19.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37.0억원에서 2030년 39.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91.7억원(연평균 3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37.0	-37.6	-38.3	-39.0	-39.7	-191.7	-38.3
- 취득세	-15.5	-15.5	-15.5	-15.5	-15.5	-77.7	-15.5
- 재산세	-21.4	-22.1	-22.8	-23.5	-24.2	-114.0	-22.8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6조제2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
 - － 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2020년 이후 추가 감면 시행, 2020~2022년은 취득세 및 재산세 45% 감면, 2023년 이후 50%로 감면율 확대)

□ (추계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3.3억원에서 2023년 31.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13.6억원
- (재산세) 2020년 27.5억원에서 2023년 30.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3.6%

[표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30.8	35.6	47.1	61.9
－ 취득세	3.3	5.5	14.1	31.3
－ 재산세	27.5	30.1	33.1	30.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47.6억원에서 2030년 52.7

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50.5억원(연평균 5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 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6조제2항)	-47.6	-48.8	-50.1	-51.4	-52.7	-250.5	-50.1
- 취득세	-13.6	-13.6	-13.6	-13.6	-13.6	-67.8	-13.6
- 재산세	-34.0	-35.2	-36.5	-37.8	-39.2	-182.7	-36.5

다.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3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시행(2021년 12월 28일 신설)
- 감면율: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 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65% 감면

□ (추계방법)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2023년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취득세 감면액: 7.9억원
- (재산세) 2023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3년 재산세 감면액: 0.2억원

[표 6]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3년
(단위: 억원)

	취득세	재산세	합계
감면실적	7.9	0.2	8.1

주: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시행이나, 2022년 감면실적이 당초 제3항의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중복된 것으로 보아 2023년도 감면실적만 반영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8.1억원에서 2030년 8.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0.5억원(연평균 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3항)	-8.1	-8.1	-8.1	-8.1	-8.1	-40.5	-8.1
- 취득세	-7.9	-7.9	-7.9	-7.9	-7.9	-39.5	-7.9
- 재산세	-0.2	-0.2	-0.2	-0.2	-0.2	-1.0	-0.2

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4항)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

□ (추계방법)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

- (취득세) 2020년 52.4억원에서 2023년 80.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59.1억원
- (재산세) 2020년 11.4억원에서 2023년 12.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 4.0%

[표 8]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52.4	73.7	78.8	80.9
- 취득세	41.0	61.7	65.6	68.0
- 재산세	11.4	12.0	13.3	12.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74.0억원에서 2030년 76.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76.2억원(연평균 7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46조제4항)	-74.0	-74.6	-75.2	-75.9	-76.6	-376.2	-75.2
- 취득세	-59.1	-59.1	-59.1	-59.1	-59.1	-295.3	-59.1
- 재산세	-14.9	-15.5	-16.2	-16.8	-17.5	-81.0	-16.2

마. 한국환경공단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7조)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계방법)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0.05억원에서 2021년 1.0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0.26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0.3억원

○ (재산세) 2019년 0.7억원에서 2023년 0.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2.1%

[표 10] 한국환경공단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76	0.77	1.71	0.94	1.03
－ 취득세	0.05	0.04	0.96	0.10	0.26
－ 재산세	0.71	0.73	0.75	0.84	0.7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1억원에서 2030년 1.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7억

원(연평균 1.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한국환경공단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47조)	-1.10	-1.12	-1.14	-1.15	-1.17	-5.68	-1.14
－ 취득세	-0.28	-0.28	-0.28	-0.28	-0.28	-1.40	-0.28
－ 재산세	-0.82	-0.84	-0.85	-0.87	-0.89	-4.28	-0.86

바.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8조)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 164.8만원

[표 12]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017	0.017	0.014	0.025	0.009
－ 취득세	0.007	0.007	0.004	0.015	0
－ 재산세	0.010	0.010	0.010	0.010	0.00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결과)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실적을 고려할 때,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사.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안 제49조)

(1)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해양환경공단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추계방법) 해양환경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
 - (취득세) 2019년 0.2억원에서 2022년 4.5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0.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 1.1억원
 - (재산세) 2019년 0.1억원에서 2023년 0.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25.8%

[표 13]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19	0.14	0.47	4.53	0.34
－ 취득세	0.07	0.03	0.36	4.21	0.05
－ 재산세	0.12	0.11	0.11	0.33	0.2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1.5억원에서 2030년 2.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5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해양환경공단 사업용 직접 사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 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9조)	-1.5	-1.7	-1.9	-2.1	-2.4	-9.5	-1.9
- 취득세	-0.9	-0.9	-0.9	-0.9	-0.9	-4.7	-0.9
- 재산세	-0.6	-0.7	-0.9	-1.2	-1.4	-4.8	-1.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